

자동차보험금 청구서 가해자불명 사고용

일부의 부분정비(카센터), 정비업체, 보험취급자가 부도덕한 방법으로 자동차 수리 물량 확보를 위하여 허위 가해자불명 사고를 조작하여 부당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선량한 고객을 회유하여, 보험범죄를 **교사(敎唆, 남을 꾀하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것)**하는 행태에 대해 **고객이 보험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고객보호 차원에서 작성하시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라며, 사회기초질서 정화 차원에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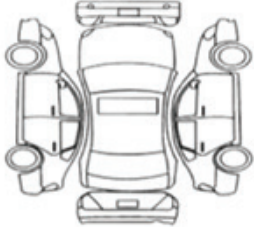
피보험 차량

차량번호	
차량명	(년식)
피보험자	
연락처	

최종 운전자 사항

성명		주민번호	
연락처		피보험자와의 관계	
면허번호		면허종별	
적성검사만료	년 월 일	일까지 사고당시(정상,정지중,취소)	

사고 사항

사고일시	년 월 일 시 분경	사고약도(주차상태)
사고접수	접수자(), 접수장소(카센터, 정비업체, 기타)	
주차 또는 사고장소(주소)		
사고경위		
경찰서	신고(경찰서), 미신고	
견인 / 입고	견인 : 유(업체명 :), 무 / 입고 경로 :	카센터 → 정비공업사
세부 작성 항목		차량 파손부위 표시
피보험자 또는 차주의 직업		
최종 주차장소 및 주차시간	주차장소 : 주차시간 :	
마지막으로 운전한 사람		
최종 주차 당시 목격자		
최초 파손 발견자 및 발견일시	발견자 : 발견일시 :	
최초 파손 상태 목격자	CCTV, 경비, 주민(기타) :	

- 상기 사고에 대하여 차량 및 특별약관 보험금을 청구하오니 지급 바랍니다.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으며, 이미 수령한 보험금은 즉시 반환하겠습니다.
-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에게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32조, 제 33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의 정책자료 및 귀사의 업무목적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, 신용정보 회사, 의료기관, 보험개발원 등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, 수탁 및 제휴업체 등에 제공·조회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.

청구 및 작성 일자	년 월 일	담당자 확인
청구인 성명	(인)	
청구인 주민등록번호		
피보험자와의 관계		

보험사기(고의사고, 허위사고, 피해과장, 음주·무면허운전, 차량·운전자 바꿔치기 등)는 범죄이며,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